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초구 제4선거구 최호정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 먼저 개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 외에도, 의원
외교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원 공무국외
활동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에 대한 심사

기준 일부 항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현재 서울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은 심사기준에 따라, 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국외활동의 목적과 방문기관의 적절성, 인원수와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준비의 내실성, 보고서의 충실성과 방문결과의 활용성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평가를 위한 세부 심사항목으로, 1일 최소 1기관 방문이라는 하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 규정은 방문도시 및 기관의 수용성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현지 기관의 공휴일 및 주말 방문 협의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 시찰과 견학, 자료수집 및 외교활동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공무국외활동에서 방문도시의 일정 주선과 협의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과 방문 성과로 직결되는 핵심적인 문제이며, 현지 근로 사정과 기관의 개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일정 조율은 서울시의회의 대외적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자, 본 의원은 방문도시 및 기관

의 수용성을 고려하고 국외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의 세부 항목에서,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해 1일' 최소 1기관 방문 규정을, '평일'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확인하였고,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운영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